

유가 자유화 실시대책

- 통상산업부 -

- '97. 1. 1부터 국내 유가를 자유화하여 현행 유가연동제 고시가 폐지되며, 국내 유가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
- 유가 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시켜 유가 자유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이고도 최소한의 실시대책 강구

□ 통상산업부는 '97. 1. 1을 기해 국내유가를 자유화하기로 하고 그 동안 매월 1일자로 시행해오던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국제 석유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을 연동시켜 매월 가격을 결정·고시해오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됨.
-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산업 자유화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97. 1. 1부로 국내석유제품 가격 및 수출입과 유통업 진입이 자유화되고 '99. 1. 1부터는 석유정제업 진입 자유화 및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
- 정부는 이번 유가 자유화 조치는 석유산업 자유화 계획의 첫번째 조치로 실시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가 자유화 조치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가자유화 실시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 유가 자유화 실시대책의 주요내용

요 약

유가 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시켜 유가 자유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적이고도 최소한의 실시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음.

- 국내 유가 모니터링 및 초기 6개월간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 가격표시제 강화 및 소비자 신고센터 설치·운영등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제도 보완과 함께
- 과도한 유가 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장애가 될 경우 최소한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 유가 안정을 도모하겠음.

- 국내 유가 동향 모니터링제 실시
-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유사 및 대리점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행위 유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가 공정한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
- 시장가격 결정 참여자로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 주유소들의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중인 가격표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시키고
- 부당가격 판매감시 및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를 정부와 민간에 설치하여 운용.
- 석유가격정보지 발간 및 음성서비스 등을 운용하여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 운용
-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 휘발유·등유·경유의 정유사 판매가격 변동시 사전에 변동가격을 보고하게 하여 정부가 자유화 시대의 가격추이를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6개월 이후에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현 유가연동 유종중 가격협상 능력이 있는 대수요처가 구매하는 B-C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므로써 최대한 행정개입 여지를 축소시킴.

- 행정지도 실시
- 국제유가 동향이나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 지나친 가격 등락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행정지도를 실시하되
- 담합 및 부당판매 등에 의한 부당가격 형성시에는 공정거래법 및 석유사업법 상의 공정거래 관련 규정으로 대처하여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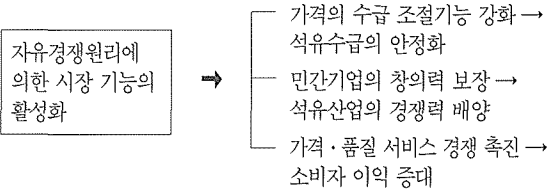
1. 추진경위

- 그동안 국내 석유가격은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결정·관리해 오면서 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유화 추진

- 94. 2 이전에는 정부가 정유사들의 평균원가에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유종별 최고가격 고시
- 94. 2 이후 정부가 국제 석유제품가격 및 환율등에 연동하여 매월 국내가격을 조정하는 유가연동제 시행

- 그러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정유사의 책임 경영 저해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 시장의 비효율문제가 현안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유가의 전면자유화 실시('95. 12 석유사업법 개정)
- 97. 1. 1 부터 유가연동제를 폐지하여 민간(정유사 등)이 자율적으로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토록 하되
- 석유가 필수 에너지원인 점을 고려, 석유위기시 및 국민경제 운용상 필요시에는 정부가 최고·최저 가격고시제 실시
- 다만 LPG의 가격은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 최고 가격 고시제 유지

*유가자유화 추진 배경



2. 유가자유화 실시에 따른 영향

- 국내 유가가 자유화되면 석유업계나 소비자등으로 가격결정 주체가 다원화되어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게 되고
- 수요자나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가격 변동이 발생가능
- 그러나 유가 자유화 초기에는 석유업계나 소비자

〈시장참여 부문별 예상되는 영향〉

	긍정적 측면(기회요인)	부정적 측면(위험요인)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 품질향상 및 서비스 향상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자담합에 의한 유가 상승 우려 • 안정공급저해 및 가격상승우려 (벽지/군소소비자)
정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이익 확보로 자력성장 기반구축 • 경영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당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 광고비용등 비생산부문 경쟁심화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조건 개선 • 판매마진 확대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 신규참입자 난립 가능성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운용 자율화정책에 부합 • 정유사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관리의 어려움 • 지역간 가격차이 발생

등이 경쟁체질에 익숙하지 못하여 다소간의 부작용이 예상

3. 예상문제점 및 대책

가. 국내유가 모니터링 실시

- 국내 유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행위 유도하여 유가 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체계

- 대상유종 :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0.1%), B-C유(1.0%)
- 조사주기 : 주 1회 조사원칙(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 조사대상 업체수
 - 정유사(5개) : 전수조사
 - 대리점(45개) : 광역 시·도별로 3개씩 표본선정
- 주유소 (460개) : 전국 시·군·구(230개)별로 2개씩 표본선정
- 조사방법 :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 병행
- 조사기관 : 석유개발공사(석유조사처)

유가 자유화 초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 정부 통제하에 억제되어 왔던 정제비, 유통마진 등 각종 비용을 일시에 현실화할 경우 과도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부담 우려
- 석유업체간의 소모적 과당 가격경쟁 발생시 대외개방을 앞둔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약화
- 석유 수출입 자유화와 동시시행에 따른 국제가격구조로의 이행 과정에서 유증간 가격등락폭 확대와
- 유통업 신규진입 자유화등으로 인한 유통시장의 구조개편에 따른 가격의 빈번한 변동 및 지역별·소비자별 가격차이 발생으로 소비자 선택에 혼란 초래 소지

대책의 기본방향

-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가격경쟁의 유도를 통해 유가 자유화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기 위해
- 시장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초기 6개월간 정유사 판매 가격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이후는 사후보고제로 전환
-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제 강화 및 석유류 유관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 지나치게 가격이 급등락하여 국민경제에 심대한 충격이 우려되거나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의 행정지도 실시

• 활용방안

-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여 주간석유뉴스 및 물가정보지 등에 매주 1회 공표

나. 상거래 질서확립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제 의무 강화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 표시대상 : 휘발유와 등유 및 경유의 판매가격
 - 표시의무자 :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
 - 표시방법 : 일반소비자가 외부에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이동판매소는 차량에 표시)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 부당가격 판매 및 법거래상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정부) 통상산업부·자원정책실 석유정책과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석유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현장 점검반 운영 :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점검반 편성·운영

안내문 게시 : 가격자유화의 내용을 일반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각 주유소 및 판매업소 입구에 안내문 게시(시행초 1개월)

다. 시장 판매가격의 정기보고 체제 확립

정유사 판매가격 사전보고제 실시

- 기간 : 자유화 시행초기 6개월간(이후에는 사후 보고제로 전환)
- 대상유종 :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 * 현 유가연동유종중 B-C유는 80% 정도가 가격협상 능력이 있는 대수요처 공급물량으로 거래 쌍방간 일방적인 가격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전보고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석유사업법 제28조

판매기록부 비치

- 석유판매업자(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는 판매기록부를 비치하고 일별 거래실적을 기록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주요 가격정보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 게재물 : 주간석유뉴스(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보(대한석유협회)
기타 물가전문정보지

라. 자유화시대의 가격 관리방안

- 국내유가의 과도한 등락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으로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행정지도 실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

관련법규

- 자료 제출 관련
 - 해당 사업자에게 대해 가격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 자료 및 경영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
 - 석유사업법 제28조 (보고 및 검사)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보고 및 검사)

-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 관련
 - 석유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가격인하, 범위반사실 공표 등

- 벌칙 관련
 - 가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석유사업법 제38조)
 - 부당가격 · 인상 등 위반행위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유사업법 제35조)

4. 관련기관별 조치사항

조치내용	관련기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의무업소 : 주유소, 일반(이동)판매소 - 표시대상 : 휘발유, 등유, 경유 • 자유화 시행 안내문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업소 : 주유소, 일반판매소 • 판매 기록부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치의무업소 : 대리점, 주유소, 일반(이동)판매소 - 양식 : 통상산업부 고시 제96-401호 (별첨 1) • 국내유가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주유소(460개) 대리점(45개) 정유사(5개) - 조사기관 : 석유개발공사 • 소비자신고센터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화 시행 안내문에 해당신고센터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 도,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시 · 도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시 · 도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시 · 도 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시 · 도 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자유화 시행 1개월간

조치내용	관련기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가격 정보물 발간 - 주간 석유뉴스, 석유협회보 등에 포함 	석유개발공사 석유협회	

통상산업부고시 (제96-401호)

국내 유가 자유화 및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가격 표시제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12월 17일
 통상산업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황을 기록·보고토록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에 의한다.

제3조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가격표시 의무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표시기격 및 대상품목) ① 표시의무자는 석유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이하 「판매가격」이라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석유제품중 휘발유, 등유 및 저유황 경유(유황분 0.1 무게%)를 말한다.

제5조 (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일반소비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대상 품목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유소 표시판은 표시내용을 일반소비자가 주유소 외부에서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기록부의 비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이동판매소는 판매기록부를 비치하고 석유제품별로 판매가격 및 판매물량등 일별거래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양식 : 별첨)

제7조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보고내용 : 석유제품중 휘발유(무연보통), 등유, 경유(황분 0.1 무계%), B-C유(황분 1.0 무계%)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보고수리자) : 한국석유개발공사
3. 조사대상(보고의무자) : 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 공장도 판매가격 : 정유 5사
 - 일반대리점 판매가격 : 전국 광역시·도(서울특별시 포함) 별 각 3개 대리점
 - 주유소 판매가격 : 전국 시·군·구별 각 2개 주유소
4. 조사체계
 -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1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
 -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함.
 - 다. 각 시·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제8조 (소비자신고센터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설치장소 :
 - (정부) 통상산업부 - 자원정책실 석유정책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 석유관련업무담당과
 -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임무 : 각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 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9조 (벌칙적용) ①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가격 표시 의무자가 가격표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이 고시에 의해 선정된 판매가격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38조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상공자원부 고시 제 1994-14호(석유류 가격표시 제 실시요령)는 본 고시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㉞

<용어풀이>

그린라운드(Green Round)

그린라운드라는 용어는 91년 10월 막스바우커스 미국상원의원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차기 GATT의 다자간협상으로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린라운드의 출범을 주장하면서 비롯되었다. 개도국들이 성장후 환경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선환경 후성장을 주장하여 선진기업들이 개도국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비용의 차이만큼 상계관세의 부과를 주장한 것이 그린라운드의 시발이다. 아직 명확한 개념은 논의 단계에 있으나 지금까지 대두된 개념을 종합하면 두가지 범주로 좁혀진다. 첫째, 국제환경협약과 각국의 개별국내법을 통해 환경기준 및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소비·무역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도입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다. 둘째, 환경목적의 무역규제조치는 자유무역원칙과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규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규제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다자가 협상을 지칭한다.